

## 【 6 】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7. 3.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 1. 제안이유

-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립도서관이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상의 시립도서관과 명칭이 중복되고 시립도서관이 덕정도서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주시립도서관」을 「양주시립덕정도서관」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조직 내부간의 착오 및 시민들의 이용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의 명칭변경

### 2. 주요골자

- 가. 「양주시립도서관」 명칭을 「양주시립덕정도서관」으로 변경함  
(안 제2조, 제3조)
- 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 폐지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안 제13조)

양주시조례 제 호

##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도서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양주시립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한다)”를 “양주시립덕정도서관(이하 “덕정도서관”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시립도서관”을 “덕정도서관”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규칙」”으로 한다.

## 양주시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립도서관이 양주시 도서관운영 조례상의 시립도서관과 명칭이 중복되고 시립도서관이 덕정도서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주시립도서관」을 「양주시립덕정도서관」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조직 내부간의 착오 및 시민들의 이용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의 명칭변경

□ 주요골자

- 가. 「양주시립도서관」 명칭을 「양주시립덕정도서관」으로 변경함  
(안 제2조, 제3조)
- 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 폐지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안 제13조)

□ 개정조례안 : 불임참조

□ 신규조문대비표 : 불임참조

□ 관계법령발체서 : 불임참조

- 도서관법
-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5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07.02.07.~02.28

- 제출의견 : 없음.

□ 그 밖에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위치 및 기능)&lt;생략&gt;<br/>           1. 양주시립도서관(이하 “<u>시립도서관</u>” 이라 한다)은 양주시 덕정동151-53번지에 두며 모든 시민에게 도서관 자료를 제공 한다.<br/>           2. &lt;생략&gt;</p> | <p>제2조(위치 및 기능)(현행과 같음)<br/>           1. 양주시립<u>덕정도서관</u> (이하 “<u>덕정도서관</u>” -----<br/>           -----<br/>           -----)<br/>           2. 현행과 같음</p> |
| <p>제3조(정의)&lt;생략&gt;<br/>           1. “도서관” 이라 함은 <u>시립도서관</u>, <u>꿈나무도서관</u>을 말한다.<br/>           2 ~ 11&lt;생략&gt;</p>                                  | <p>제2조(정의)(현행과 같음)<br/>           1. ----- <u>덕정도서관</u> , -<br/>           -----<br/>           2 ~ 11(현행과 같음)</p>  |
| <p>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br/>           1. &lt;생략&gt;<br/>           2.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u>도서관 및 독서진흥법</u>」의 규정에 의한다.</p>                            | <p>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br/>           1. (현행과 같음)<br/>           2. -----<br/> <u>규칙으로 정한다.</u></p>   |

## 관계법령 발췌서

○ 도서관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로 개정  
[일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69호]

○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5조(세부 분장사무) 사업소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꿈나무도서관담당, 도서관건립담당, 덕정도서관담당

##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구조례)

제정 2003. 10. 19 조례 제132호  
전문개정 2006. 5. 22 조례 제257호  
(제명개정)  
개정 2006. 12. 28 조례 제289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독서진흥 및 정보화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양주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기능) 도서관의 위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주시립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한다)은 양주시 덕정동 151-53번지에 두며 모든 시민에게 도서관자료를 제공 한다
2. 양주시립꿈나무도서관(이하 “꿈나무도서관”이라 한다)은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548-4번지에 두며 유아 및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에게 도서관자료를 제공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시립도서관, 꿈나무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한 자료로써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의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열람”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단체대출”이라 함은 행정기관장·교육기관장·사회단체장·군부대장등(이하 “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이 단체대출을 신청하여 양주시립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자료를 관외로 대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12. 28>
6.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에 따른 실비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7. “과학체험프로그램”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보급을 위하여 편성된 각종경연·실험·실습·강좌·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8. “문화프로그램”이라함은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문화욕구충족을 위한 각종 강좌·기행·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9. “회원”이라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10. “가족회원”이라함은 회원가입 신청 시 가족회원으로 이용자번호를 부여받고 가족구성원의 이름으로 도서관자료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회원을 말한다.
11. “유아”라 함은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도서관의 정기휴관은 주1회를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과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관리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기휴관일 이외에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 7일 이전에 기간과 사유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수칙) ①도서관 이용자는 본 조례 및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수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제6조(회원) ①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5세 이상인 사람
2. 양주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6. 12. 28>

②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③회원이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 및 이용자수칙을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이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다.

④회원가입,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외대출 및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1. 도서관 회원
2. 학술조사연구, 공무 수행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행정기관장의 관외대출 신청에 의하여 단체대출을 승인한 사람 <개정 2006. 12. 28>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6. 12. 2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1. 회귀자료 및 고서등 귀중도서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3. 열람의 빈도가 높은 참고도서
4. 시청각자료
5. 기타 도서관 자료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06. 12. 28>

③장서점검·환경정비 등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관외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제8조(사용료등) 도서관 이용시 자료의 복사를 위한 사용료, 교육문화강좌에 따른 수수료는 각각 별표 1, 2와 같다. 다만, 교육문화강좌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교육문화강좌 프로그램의 내용을 고려하여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제9조(도서관이용의 제한) ①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1. 음주자
2. 유행성 및 법정전염병 환자
3. 정신질환성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
4. 타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도서관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이상행동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
6. 도서관자료 및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파손 후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7. 보호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만6세 미만의 유아. 다만, 보호자는 만14세 이상이어야 한다.
8.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9. 안전과 질서유지 및 이용자 다수의 편익을 위한 도서관직원의 협조요청을 거부하는 사람

②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제10조(개인정보 이용)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하여 「주민등록법」 규정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1. 반납기한이 지난 관의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시 행위자 확인

제11조(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거나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이나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에 소요 되는 금액 또는 도서관자료의 정가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2.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②변상의무자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변상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기증)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문고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도서관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한다. <개정 2006. 12. 28>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이 결위되어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질병이나 전출·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판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8>

제19조(간사) 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 12. 28>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20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자격박탈 및 정지처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이용제한 처분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처분

②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의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5. 22 조례 제2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정 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12. 28 조례 제289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시설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양주시립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제1항제3호, 제2항 본문, 제2항제5호,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과 제2항, 제10조 본문, 제12조, 제18조제3항, 제21조제1항 중 “소장”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 제14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중 “소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시장”을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생략

[별표 1]

## 자료복사사용료(제8조 관련)

| 시 설 명            | 규 격 | 기 준 | 금 액(원) | 비 고 |
|------------------|-----|-----|--------|-----|
| 복 사 기<br>(자료복사료) | B5  | 1매  | 20     |     |
|                  | A4  | 1매  | 30     |     |
|                  | B4  | 1매  | 40     |     |
|                  | A3  | 1매  | 50     |     |
| 프린터기<br>(자료인쇄료)  | A4  | 1매  | 50     |     |

[별표 2]

## 교육문화강좌 수수료(제8조 관련)

| 구 분         | 강 좌 별 | 금 액   | 비 고                  |
|-------------|-------|-------|----------------------|
| 어 린 이 · 노 인 | 취미강좌  | 월 1만원 | 재료비 및 제비용은<br>수강자 부담 |
|             | 어학강좌  | 월 3만원 |                      |
| 청 소 년       | 취미강좌  | 월 2만원 |                      |
|             | 어학강좌  | 월 4만원 |                      |
| 성 인         | 취미강좌  | 월 2만원 |                      |
|             | 어학강좌  | 월 5만원 |                      |

- ※ 1. 수수료는 강좌개설과정(기간)단위로 징수함.  
 2. 어린이는 초등학생이하,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이하, 성인은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노인은 65세이상으로 함.